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10.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1호로 2020년 10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 안 제3조~제4조
- 다.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 : 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를 규정 : 안 제6조~제8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해 규정 : 안 제9조~제10조
- 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 : 안 제11조~제12조
- 사. 소위원회의 구성, 서면심의 규정 : 안 제13조~제14조

- 아. 심의결과 등 비치, 의견청취, 수당 지급 규정 : 안 제15조~제17조
- 자. 위원회 운영세칙, 심의신청 시기 및 절차 규정 : 안 제18조~제20조
- 차.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규정 : 안 제21조
- 카.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규정 : 안 제22조
- 타. 시행규칙을 규정 : 안 제23조
- 파. 부칙 규정

4.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인권영향평가 :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위원회 운영사항 : 원안동의

나. 입법예고(2020. 9. 3. ~ 9. 23. /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총 23개 조문, 4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부터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신청 시기,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는 수립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청장이 준용토록 규정하였음.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